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의 · 개선 요구

제 목 근무성적평정 업무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

내 용

1.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정점 미부여

충청남도는 매년 4월 말, 10월 말 기준(2015년까지는 6월 말, 12월 말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5급의 경우 ○○직렬과 ○○○○직렬을, 6급의 경우 ○○직렬과 ○○직렬 및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정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4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까지 6회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평정점 부여 기준¹⁾과 순위만 의결했을

1) 승진후보자명부 통합운영 직렬의 경우 통합 직렬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정점을 배분하도록 의결함

뿐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별 평정점이 기록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날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은 승진후보자명부 통합 직렬(○○○○ 5급, ○○·○○ 6급)의 경우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점을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아닌 인사부서에서 현직급 임용일, 기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근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표]와 같이 부여하였다.

[표] 승진후보자명부 통합직렬 1위 평정점 부여 현황

<단위: 점>

구분	5급		6급			비고
	○○직렬	○○○○직렬	○○	○○	○○	
2016하	70	64	70	68	70	
2016상	70	64	70	68	70	
2015하	70	64	70	68	70	
2015상	70	64	70	68	70	
2014하	70	64	70	68	70	
2014상	70	65	70	68	70	

2. 근무성적평정평가단 운영 부적정

위 관서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위해 근무성적평정평가단을 직급별²⁾로 구성하여 직렬별 5급 이하 ‘수’ 대상자 선정 및 순위를 결정한 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 5급 평정은 과장급으로, 6급 이하 평정은 팀장급으로 구성

위 관서의 5급 이하 근무성적 평가체계는 실·국 단위 평정 후 근무성적평정평가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전체서열을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근무성적평정평가단은 평정대상 직렬의 ‘수’대상자를 선정하고 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승진대상자 결정 단계에서도 충청남도 인사위원회는 승진심사에서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반영된 승진후보자명부 순서 위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근무성적평정평가단을 2014년부터 운영해 오면서 인사규칙 등에 근거를 두지 않고 ‘근무성적평정평가단 운영방안’에 대한 충남도지사 방침 결재를 받아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 평가위원의 추천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추천 실·국에 따라 인사담당자가 직렬을 안배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하거나 희망자 위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등, 실·국 인사담당자의 주관적이고도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가는 평정대상 기간의 근무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속 공무원근무성적평정 평가단에 제공되는 자료는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현부서임용일, 서열명부, 실·국 추천순위 등 단순 현황자료로 근무성적평가에서 중요한 대상자의 실적은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지사는

[주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시 승진후보자 명부 통합직렬의 점수 부여기준을 명확히 하고 평정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날인하도록 하여 인사부서에서 평정점 부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① 근무성적평정 단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근무성적평가단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② 평가단 운영 측면에서도 평가위원 추천 기준을 마련하고, 피평가자의 평정기간 중의 실적을 제공하며, 근무성적평정평가단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단 운영 내실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